

이러닝지원센터 규정

제정 2020. 3. 1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이러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과 기능) ① 센터에는 본 대학교의 원격교육용 콘텐츠 제작 및 원격수업 지원, 교수-학습지원에 관련된 시스템의 관리를 위하여 원격콘텐츠제작지원부, 시스템관리운영부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예.결산 보고
2. 원격수업 및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3. 원격수업 및 온라인 공개강좌 운영 지원
4. 학습관리시스템(LMS), MOOC시스템, 학생역량관리시스템(CanDo시스템) 및 글쓰기시스템(HoW클리닉) 관리
5. 센터 운영에 관한 통계분석, 기록물, 센터 홈페이지 관리
6. 센터 소관 위원회 운영
7.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및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8. 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장은 센터 구성원이 참여하는 정기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이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 (이러닝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이러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2. 교무처, 기획처, 인재개발처, 전산정보처의 책임급 실무자를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1인의 간사를 둔다.
3.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하여 학기당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인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4. 위원회 활동사항은 교육혁신처장에게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2. 원격수업 이외 교수-학습지원 콘텐츠의 질 관리에 관한 사항
3. 센터 사업의 계획, 운영 성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부 칙(2020. 3.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련규정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교육매체제작실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